

## 『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(UIA) 개최』 준비에 따른 협약서

서울특별시(이하 “서울시”라 한다)와 한국건축단체연합(이하 “FIKA”라 한다)은 「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(UIA)」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 단, 『UIA 서울조직위원회』 설립 시 동 업무협약에 대해 인수인계 등 체결사항 유효 함.

**제1조(목적)** 이 협약은 「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(UIA)」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“서울시”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“FIKA”가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**제2조(사업내용)** “FIKA”는 「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(UIA)」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행한다.

1. UIA 5개 권역별 국제회의, UIA 이사회 등 해외 건축행사 참석 홍보 등
2. 국내외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배포
3. 국내 건축행사 홍보 부스 설치 등
4. UIA 본부 제2차 지불금 지원
5. 기타 “서울시”가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

**제3조(사업기간)**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탁기간은 협약이 체결되는 시점부터 2013. 12. 31까지로 한다

**제4조(사업계획)** ①“FIKA”는 제2조 각 호의 개별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“서울시”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“FIKA”는 제1항의 세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“서울시”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5조(사업의 시행)** ①“FIKA”는 제4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

②“FIKA”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“서울시”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③“FIKA”는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
④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은 “서울시”의 시책변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조정 할 수 있으며, “FIKA”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사업비의 지급)** ①“FIKA”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비를 청구하여야 한다

②“서울시”는 “FIKA”가 제출한 사업비 집행계획서를 검토 후 2013 사업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한다.

**제7조(사업비 집행 및 관리)** ①“FIKA”는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

②“FIKA”는 사업비를 「지방재정법」, 「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」, 「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」, 「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 집행기준」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관리·집행 하여야 한다.

③“FIKA”는 “서울시”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당해 사업계획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인건비, 사무실운영비, 회의에 따른 수당 등 정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

④“FIKA”는 사업비 집행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사용·집행 해야 한다. 다만 카드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계좌입금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다.

**제8조(사업비 정산 및 반환)** ①“FIKA”는 제3조에 의한 사업 종료후 30일 이내 사업 종료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“서울시”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때,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“서울시”에 반납(이자 포함)하여야 한다.

②“FIKA”는 정산서 제출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1. 카드결제전표, 계좌입금증 등 지출 증빙서류
2. 제7조 제4항에 반하는 집행인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

③“서울시”는 “FIKA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와 “서울시”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.

**제9조(지도·감독)** ①“서울시”는 이 사업과 관련한 “FIKA”의 업무를 지도·감독한다.

②“서울시”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,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“FIKA”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“FIKA”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**제10조(손해배상 등)** ①“FIKA”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·사고에 대하여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 다만, “FIKA”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“FIKA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“서울시”가 제3자로부터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“FIKA”는 “서울시”에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협약의 해지)** ①“서울시” 또는 “FIKA”는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.

②“FIKA”가 해지를 요구하는 때에는 인계일 까지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
③“서울시”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“FIKA”가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
2. “서울시”가 공익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3.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때

④“서울시”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“FIKA”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⑤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“FIKA”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“서울시”에 청구 할 수 없다.

**제12조(협약의 해석·변경 등)** ①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간 협의 결정한다.

②본 협약 이후 사업에 대한 “서울시”의 방침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③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상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하되 최종적으로 “서울시”가 정한다.

**제13조(협약의 효력)** ①이 협약은 서명일부터 협약사항의 이행완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 다만, 민·형사상의 사건·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·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관련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.

②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“서울시”와 “FIKA”가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3. 3. .

서울특별시장  
박원순

한국건축단체연합 대표회장  
강성익

---